

본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지침,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지침, 유·초·중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대학 실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. 본 지침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지역 확산 정도에 따라 보다 강화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

본 지침은 코로나19 발생상황 및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지침의 변화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. [본 지침은 2022.5.1.부터 적용](#)되며,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.

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

(제6판)

해당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방역당국의 방역수칙을
적용·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. 4. 28.

교 육 부

【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대학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(시기별)】

적용시기	현행	준비단계(~4.30.)	이행단계(5.1.~)
등교 기준	▶ 7일 격리(등교중지)	유지	유지 ※ 향후 확진자 격리기준 변경 시 방역당국의 기준 반영
강의실 방역기준	▶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▶ 체육관·무용실 4m ² 당 1명 실험실습실 2m ² 당 1명	유지 ※ 대학 자체 강의실 밀집도 기준 설정을 위한 대학별 의견수렴	<u>대학 자율</u> ※ 학생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대학별 자체 방역기준 설정 가능
자체조사	확진자의 동거인(기숙사), 마스크 미착용접촉자 및 같은 공간 생활근무자 검사	확진자의 동거인(기숙사) 및 같은 공간 생활근무자 중 “유증상, 고위험기저질환자” 중심 조사	<u>대학 자율</u>
방역 관리	<p>출입 관리 외부인 건물출입을 제한하고 출입자 발열체크</p> <p>전담 관리인 확진자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관리인 지정</p> <p>행사 방역당국 행사기준 준수, 숙박시 교육부 기준 추가 준수</p> <p>기숙사 기숙사 내 확진자 발생시 생활치료센터 입소</p> <p>마스크 보건용 마스크(KF80이상) 권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</p> <p>BCP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비상계획 수립 및 대응체계 구축</p> <p>환기 창문 상시개방</p> <p>식당 식당 내 거리두기</p>	<p>대학 자율 유지</p> <p>대학 자율 유지</p> <p>대학 자율 유지</p> <p>대학 자율 유지</p> <p>대학 자율 유지</p> <p>대학 자율 유지</p>	<p>대학 자율 유지 ※ 숙박행사 기준 일부 완화 ※ 숙박행사 기준을 방역당국의 행사기준 완화에 따라 일부 완화</p> <p>대학 자율 유지 ※ 생활치료센터 감축으로 입소 어려울 경우 격리실 수용 또는 귀가조치</p> <p>대학 자율 유지</p> <p>대학 자율 유지</p> <p>대학 자율 유지</p> <p>대학 자율 유지</p>

목 차

I. 목적 및 기본원칙	1
II. 코로나19 대응 기본방향	2
1. 방역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	2
2. 감염예방을 위한 안내 철저	3
3. 유증상자에 대한 등교(출근) 중지	4
4. 방역, 소독 등 환경·위생 관리	5
III. 평상시 대응	6
IV.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	7
V. 강의실·기술사 등 시설 관리	8
1. 강의실	8
2. 기숙사	8
3. 기타 교내 다중이용시설 등	10

▷ 참고 ◇

1. 「코로나19 관련 대학생 개인 방역 행동수칙」 12
2. 다중이용시설 및 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해제 14
3. 재택치료 시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서 포스터 5종 15
4. 교육부 자가진단 앱 설명자료 16
5. 냉난방기 사용 시 환기 수칙 20
6.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21
7. 일상소독 카드뉴스 22

I

목적 및 기본원칙

1

목적
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* 유행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,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대학생 및 교직원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
 - *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제2조제3호)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(제1호가목)에 따라 ‘제2급감염병’으로 지정
-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대학의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학·교직원 등의 역할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및 시설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함
 - 특히, 대학에 따라 규모, 운영 방법, 자원 등 제반여건이 다르므로 대학이 지켜야할 필수적이고 공통적인 기본 원칙을 제시
 - ※ 본 가이드라인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대학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 적용 가능

2

기본원칙

-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동안 대학의 수업 및 수업 외의 각종 활동 (행사·자치활동·운동부 훈련 등)을 대면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감염예방을 위해 본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
- 대면수업·활동 진행 시, 등교(출근) 전 임상증상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등교(출근) 하지 않도록 하며, 등교 시 또는 등교 후 유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학내 코로나19 감염 전파 및 확산 방지
 - ※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: 발열(37.5°C 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소실 등
-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 실시,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홍보 강화, 환경 위생관리 등으로 감염 예방 철저

1 방역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

- 대학 구성원의 적절한 역할분담^{*}을 담은 **대응계획**(학생 심리지원 포함)을 수립·시행하여 학교 내 직원관리, 환경관리, 상황발생 즉시 대응 등 업무 수행
 - * 학교의 코로나19 대응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를 세분화하고 역할을 정확히 숙지
- 대응계획에 따라 **코로나19 총괄담당자** 및 **실무담당자**(이하 담당자)를 지정하고, ‘대학 일상회복지원단’을 구성하여 감염예방 활동 수행 및 일상회복 방안 마련
 - ※ 임신부, 당뇨병, 만성호흡기질환(천식, 만성폐질환자) 등은 담당자에서 제외
 - ※ 각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던 코로나19 비상관리조직을 ‘대학 일상회복지원단’으로 전환하여 운영

————— < (참고) 대학 일상회복지원단 구성 및 주요 기능 > —————

- ▶ **(구성)** 학내 코로나19 대응 총괄(총장 또는 부총장 등), 실무담당자, 학생(반드시 포함) 등
- ▶ **(기능)** 새로운 방역체계 적용 및 방역관리 상황에 대한 대학 방역관리, ’22년 1학기 학사 운영 및 방역 관리 방안 등 일상회복 전환에 대한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
 - 변경된 방역 수칙과 기초 방역수칙을 학내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**홍보** 및 **교육**하여 생활 속 방역 관리 철저

- 비상관리조직, 대학본부, 단과대학, 대학원, 대학보건실 등이 코로나19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 및 보고체계 구축
- 재유행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학교별 기 수립한 **업무연속성 계획(BCP)** 지속 유지 및 재유행 시 방역관리 강화 대비
 - ※ 「감염병 발생 시 대학 업무연속성계획 가이드라인」(교육부, '22.2.10.) 참고
- 담당자는 대학 내 유증상자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, 교육부 및 유관 기관(관내 보건소, 인근 선별진료소, 콜센터 등) 연락처를 파악하여 **비상연락체계**를 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
 - 인근 선별진료소, 지정의료기관의 위치 및 연락처 등을 확보하여 필요시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

2

감염예방을 위한 안내 철저

-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코로나19 최신 정보 및 방역지침 변동 등을 확인하여 학생·교직원 등에 안내
-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및 등교하지 않도록 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전에 적극 안내 및 관리 철저
- 실내 마스크 착용, 손 씻기, 기침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수칙을 학생 및 교직원이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·홍보 집중 실시

《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(권고) 》

질병관리청

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위한

2022.4.26.

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

수칙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

수칙2 올바른 **마스크 착용**으로 입과 코 가리기,
실내 음식물 섭취 등 **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**

수칙3 흐르는 물에 30초 비누로 손 씻기, 기침할 땐 옷소매로

수칙4 1일 3회(회당 10분) 이상 **환기**,
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**소독**

수칙5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**최소화** 하기

수칙6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**진료받고 집에 머물며**
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

- 감염병 예방수칙 포스터, 코로나19 행동수칙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을 대학 내 게시판 등 주요장소에 부착

3

유증상자 등에 대한 등교(출근) 중지

-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,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 방문 또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여 진료 및 검사
- 주요 상황별 등교(출근) 기준

<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(출근)기준 >

구분	나의 상황		
	격리·감시기간	검사	등교(출근) 기준
"내가" 확진자인 경우 ①	격리*(7일)	-	격리기간 중 등교중지
"동거인아" 확진자인 경우 ②	수동감시(10일)	3일 이내 'PCR 검사*' 권고 *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,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6~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	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등교

* 격리·감시해제일, 검사기준일 산정: 확진자의 검사일(검체채취일)로부터 계산

*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: 출근·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,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 상시 착용,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(다중이용시설, 감염취약시설 등) 이용(방문) 제한 및 사적모임 자체

【상세설명】

① (내가 확진자인 경우) 격리기간(7일) 중 등교·출근 중지

※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(PCR 검사, 신속항원검사)는 하지 않음

② (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) 나는 10일간 수동감시이며, 내가 받는 검사는 확진자(동거인) 검사일(검체채취일) 기준으로 "3일 이내 PCR 검사*", 6~7일차 신속항원검사"를 권고하고,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·출근중지(자택대기)를 권고

*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,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(지정의료기관)로도 대체가능

※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, 발열,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

※ 참고 :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」(지자체용) 등

- 대학은 상기 ①~②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출결 및 근태 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
 - ※ (예시) 학생 : 출석 인정 / 교직원 :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
 - ※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보건소의 음성 확인 문자, 지정의료기관의 음성확인서, 의사소견서, 진료확인서, 처방전 등) 또는 보호자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출결 및 근태관리

4

방역, 소독 등 환경·위생 관리

- 대학 내 시설물, 통학버스, 기숙사 등 주요 공간 일상 소독 및 환기
 - 구성원이 자주 접촉하는 표면(손잡이, 키오스크, 각종 버튼, 수도꼭지 등)과 엘리베이터, 음수대 등은 1일 1회 이상 일상소독 실시
※ 일상 소독은 1일 1회 이상, 환기는 1일 3회 이상 권고
 -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, 상시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주기적으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하거나, 환기 설비를 가동
 - 창문 환기 시 창문을 동시(외기, 복도)에 열어 환기량을 최대로 할 것
 - 냉·난방기(공기청정기 포함) 사용 시, 수시로 환기 실시
※ 냉난방기, 공기청정기 사용 시 실내공기 재순환으로 비말이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주 환기하고 풍향 및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
- 대학 내 시설 및 화장실 등에 손 세정제, 비누 등을 충분히 비치
 - 대학 시설 곳곳에 휴지와 덮개가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, 기침이나 재채기 시 사용한 휴지를 깨끗하게 버릴 수 있도록 조치
- 보건용 마스크(KF80 이상), 체온계, 자가검사키트 등 방역물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

1 등교 전

- (학생 및 교직원) 등교(출근)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인지한 경우 등교(출근)를 하지 않고 지도 교수, 복무담당자 등에 연락
 -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·검사를 실시하거나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하여 검사 실시
 - ※ 본인이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PCR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,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(교직원)은 등교(출근)를 중단 권고
 -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(출근)가 가능하나,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권장
 - 증상이 호전된 경우 지도교수 및 복무 담당자에게 알린 후 등교
- (대학) 등교(출근) 전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발견하여 자가검사키트 결과 ‘양성’으로 PCR 검사를 받은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등교(출근) 중지

2 등교 후

- 수업(근무) 중 의심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시킨 후,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·검사를 실시하거나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검사토록 안내
 - 대학별 확보한 자가검사키트를 기숙사, 실기·실험·실습실 등에 우선 배치하여,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검사할 수 있도록 대비
 - 학생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을 인정하여 출결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, 수업 결손 보완 방안 마련
- 수업에 참여하는 교수, 조교, 학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,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입실이 불가함을 안내

IV

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

□ 대학 내 접촉자 자체조사 및 신속항원검사 실시

◆ 학교 자체조사 및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, 처벌 등을 적용하지 않음

- (접촉자 자체조사) 학내 확진자 발생 시 기숙사 동일 호실 거주자, 동일 공간(부서)에 근무·생활하는 구성원 중 고위험·기저질환자 및 유증상자에 대해 자가검사키트를 활용 5일 간 2회 실시 권고

《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(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 참고) 》

▶ ① 기숙사 동일 호실 거주자와 ②동일한 공간에서 생활 또는 근무하는 학생 (교직원)* 중 “고위험 기저질환자 및 유증상자”

*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전일 동일한 공간에서 수업을 듣는 전공학과(약대, 간호 학과 등)의 같은반 구성원, 같은 행정실 부서원 등

- 5일간 2회 이상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여 검사하며 ‘음성’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교, ‘양성’인 경우 PCR 검사 실시
- 대학별 구매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여 자체조사 후 검사 필요한 학내 구성원에 대해 검사 실시
- 5.1. 이후 일률적 지침에 따른 접촉자 자체조사 종료하며, 대학별 여건에 따라 고위험 기저질환자 및 유증상자 중심의 자율관리로 전환

□ 학내 마음건강 전담조직(학생상담센터 등) 및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확진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심리·정서 지원

- 타 대학 및 기관 우수 프로그램* 등을 도입하거나 각 대학 여건에 맞게 일부 변경하여 활용토록 권장

* 2021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성과사례집 배포('22.1.) 및 성과포럼 개최('22.2.8.)

1

강의실

□ 강의실 내 감염 예방 조치

- (강의실 방역기준 해제)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5.1. 기준 해제하며, 학내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강의실 밀집도 기준을 해제하거나 대학별 별도 기준 설정 가능

□ 소독·환기

- 가급적 1일 1회 강의실을 일상 소독하고, 학생 및 교직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강의실 내부에 손 소독제 비치
- 수업 전 창문을 열어 놓고, 수업 중에도 수시로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환기 양을 증가시키는 등 충분한 환기 실시

※ 환기는 창문과 문을 모두 개방하여 맞통풍이 가능하도록, 일 3회 이상 권고

2

기숙사

□ 기숙사 방역관리자 지정 및 관리방안 수립

- 대학은 기숙사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, 기숙사 방역관리자는 해당 시설 특성에 맞는 세부 방역관리 방안 수립
 - 해당 방역관리 방안에 의거하여 입소생 관리를 포함한 방역 및 관리활동 수행

□ 유증상자 또는 의심환자 신속 격리

- 코로나19 환자로 의심되는 학생 및 종사자 등 발생시,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사전준비 및 관리자 교육 실시
 -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 발생 시, 격리할 수 있는 별도 격리실 확보 및 체온계,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비

- 지자체 협조체계 구축
 -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지자체와 연계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
※ 관내 보건소, 인근 선별진료소, 콜센터(지역번호+120 또는 1339)
- 기숙사 입소생 중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시킨 후,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·검사를 실시하거나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검사토록 안내
 - 유전자검사(PCR)를 실시한 경우,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기숙사 1인실(화장실 및 세면실 포함) 대기 조치
 -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운영 시설 정상복귀
- 생활치료센터 단계적 감축으로 기숙사생 확진자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지 못 할 경우, 기숙사 내 격리실 수용 또는 귀가조치

□ 감염예방을 위한 기숙사 방역

- 기숙사 출입, 공용 공간 이용 등을 위한 이동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동 간, 층 간 및 호실 간 이동 자제
-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손 씻기, 기침예절 등 감염예방 행동 수칙 교육 실시 및 행동수칙 관련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장소에 부착
※ 취침공간 외 생활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철저, 공용 공간(화장실·샤워실 등) 이용 시 최대한 동선 겹치지 않게 하기, 기숙사 내 집단 간식섭취 자제 등
- 기숙사 내 화장실 개수대(비수동식 수도꼭지 등)에 손 세정제(액체비누 등) 및 손소독제, 휴지, 종이타월 등을 충분히 비치
※ 덮개 있는 휴지통을 곳곳에 비치하고, 휴지통은 주기적으로 비워 오염 물질이 기숙사 내에 방치되는 것을 방지
- 시설 내 주요 공간·물품의 일상 소독 및 환기 강화
 - 청소·소독은 1일 1회 이상, 환기는 1일 3회 이상 권고
 - 다수 인원이 이용하는 공간 및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물품에 대한 소독과 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

□ 입소생, 종사자 및 방문객 관리 강화

- 입소생들과 접촉이 잦은 기숙사 출퇴근 종사자들에 대한 방역관리 계획 마련 등 관리 철저
 -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·검사를 실시하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하여 검사 실시
- 입소인원 외 외부인(학부모, 방문자, 음식배달원 등)의 출입 자제

3 기타 교내 다중이용시설 등

□ 교내 식당 등(카페, 편의점, 매점 등 취식 공간 포함)

- 교내 식당 이용 개시 전 식당 전체 소독 실시, 학생 및 교직원 접촉이 빈번한 시설·기구 매일 일상 소독, 식당 환기 강화
 - ※ 일상 소독의 경우 1회 이상, 환기의 경우 3회 이상 권고
 - 식당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식사 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
- 대학별, 식당별 여건에 맞게 학생 및 교직원 간 접촉 최소화 및 식사 시 일정거리를 두고 식사할 수 있는 방안 마련
- 식당 관리자는 종사자들에 대한 방역관리 계획마련 등 관리 철저
 -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출근 중단 및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·검사를 실시하거나 자가 검사키트를 활용하여 검사 권고

□ 통학버스

- 버스 운전자 및 탑승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 예절을 준수
- 차량 내·외부를 주기적으로 일상 소독*하며, 버스 운전자 및 탑승자 전원 마스크 착용
 - * 출입문, 손잡이, 의자, 버튼 등 탑승자의 손이 닿는 부분 수시 소독 실시
- 차량 운행 전후 차문 또는 창문 등을 개방하여 주기적 환기 실시

□ 학내 행사

- 중앙사고수습본부의 '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'에 따라 인원제한 없이 행사 진행 가능하며, 마스크 착용 의무는 중앙 방역대책본부 별도 안내 시까지 유지
 - 학내 방역담당 부서는 기타 환기, 소독, 사람 간 거리두기(1m) 등 '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'의 권고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방역수칙 홍보

<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준수사항 >

- 단위 부서의 장 또는 학과장에게 신고 후 진행하며, 학생 인솔, 방역 수칙 준수 지도 등을 위한 지도교수 등 교직원 동행 필수
- 행사 시작 전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선제 검사 권고
- 프로그램 활동 외에 참여 학생들의 개별 활동(야간 음주, 노래방 방문 등) 자제
- 마스크 착용, 사람 간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

□ 기타 시설

-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도서관, 동아리방, 학생회관, 운동부실, 고시반, 연습실(작업실) 등 운영 시 수시로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 환기 양을 증가시키는 등 충분한 환기 실시

참고1

「코로나19 관련 대학생 개인 방역 행동수칙」

1 기본 방역 수칙

-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개인별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
 - 일상생활을 함께 있어 아래의 중요 수칙 메시지를 항상 명심하고,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

《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(권고) 》

*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(질병청 지침)

- ❶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
- ❷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,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
- ❸ 흐르는 물에 30초 비누로 손 씻기, 기침할 땐 옷소매로
- ❹ 1일 3회(회당 10분) 이상 환기,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
- ❺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
- ❻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

-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검사 필요

2 등교 수업 시

- 등교 전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의심 증상을 인지한 경우 등교하지 않고, 지도교수, 학교 내 감염병 대응 부서 등에 연락
-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·검사를 실시하거나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하여 검사 실시
 - ※ 본인이 역학적 연관성 등이 있어 PCR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,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단 권고
-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가 가능하나,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권장
 - ※ 37.5°C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지정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

3

일상 생활 시

□ 기숙사 생활 시

- 기숙사 생활 시 항상 손 씻기, 손 소독 등을 통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
- 기숙사 내에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동 간, 층 간 및 호실 간 이동은 자제하고, 특히 방에서 함께 음식을 나눠먹는 행위는 자제
- 방 밖을 벗어나는 경우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며, 공용공간(조리실, 세탁실, 화장실)은 혼잡하지 않도록 이용시간을 분산하여 이용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
 - 공용 공간에서는 음식 섭취, 대화, 전화 등 비밀 발생이 가능한 행위는 최대한 자제
 - 특히 기숙사 내 취사가 가능한 경우 취사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, 식사는 개별 방 또는 식당에서 할 것을 권고
-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자연 환기가 어려운 경우 매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권고
-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기숙사 관리자에게 알리고,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
※ 기숙사 관리자는 의심 환자 발생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별도 공간에 분리

□ 동아리, 종교 활동 등 소모임 행사 시

- 발열,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는 경우 참여 자제
- 입과 코를 가리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며, 좌석 간격 등 다른 사람들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 유지

참고2

다중이용시설 및 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해제

□ 적용 기간

- 2022년 4월 18일(월) 0시 ~ 별도 안내 시까지

※ 일부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되는 '실내 취식 금지' 조치는 2022.4.25.(월) 0시부터 해제

□ 적용 대상_지역

- (대상 지역) 전국 17개 시·도
- (대상 시설) 다중이용시설 등 33종

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(33종)

<취식 금지시설_18종>

- ▲ 노래(코인)연습장 ▲ 실내체육시설 ▲ 목욕장업 ▲ 경륜·경정·경마/카지노(내국인)
- ▲ 멀티방 ▲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▲ 마사지업소·안마소 ▲ 오락실 ▲ 전시회·박람회
- ▲ 이미용업 ▲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▲ 학원 등 ▲ 독서실·스터디카페
- ▲ 영화관·공연장 ▲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 ▲ 도서관 ▲ 상점·마트·백화점 ▲ 종교시설

<취식 가능시설_13종>

- ▲ 유흥시설 등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·무도장)
 - ▲ 식당·카페 ▲ PC방 ▲ 파티룸 ▲ 결혼식장 ▲ 장례식장 ▲ 돌잔치 ▲ 유원시설
 - ▲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▲ 실외체육시설 ▲ 숙박시설 ▲ 키즈카페 ▲ 국제회의·학술행사
- ▲ 콜센터 ▲ 물류센터

※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위 의무적용 시설과 자유업 기타 미등록, 무허가 시설 등 유사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계속 적용 등 강화 조치 가능

□ 방역 수칙

- (사적모임 등) 사적모임 등 모임·행사에 적용된 방역지침을 해제
하되, 마스크 착용 의무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별도 안내 시까지 유지
- 기타 환기, 소독, 사람 간 거리두기(1m) 등 권고사항은 '생활 방역
세부수칙 안내서' 참고

*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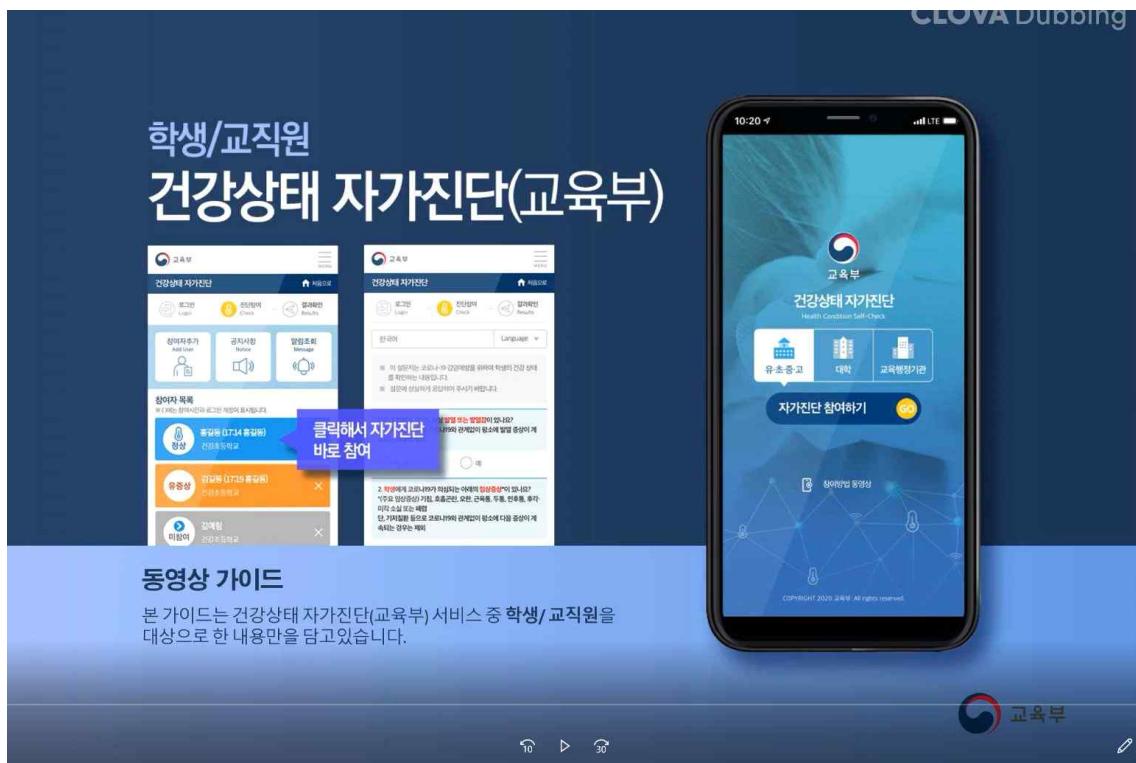
**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름

참고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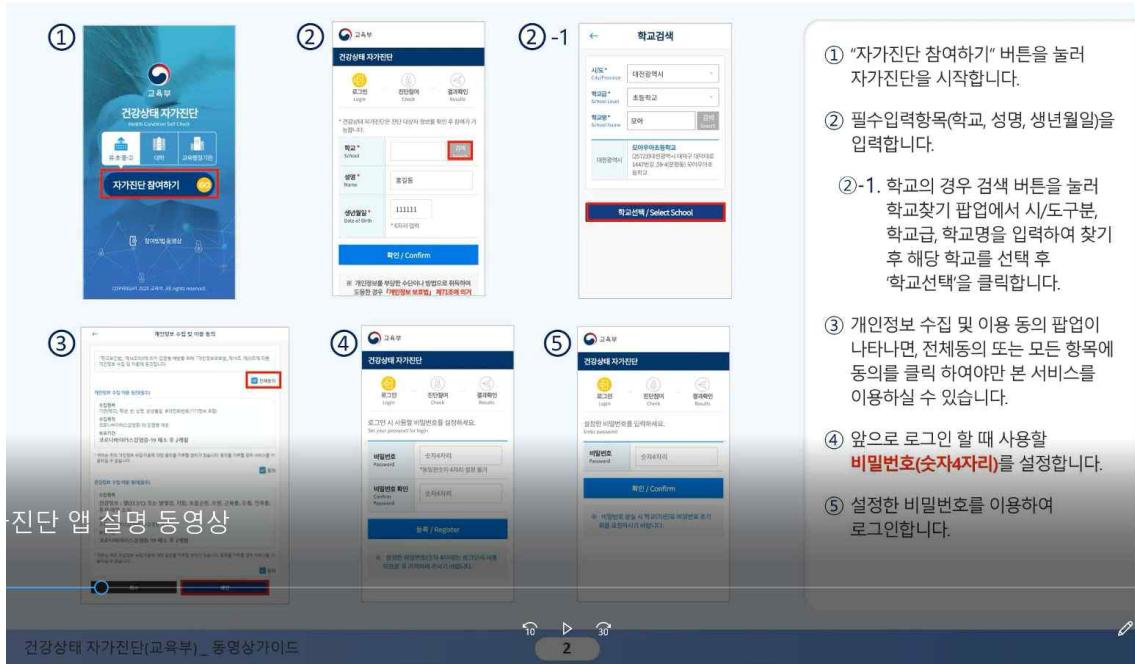
재택치료 시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서 포스터 5종

참고4

교육부 자가진단 앱 설명자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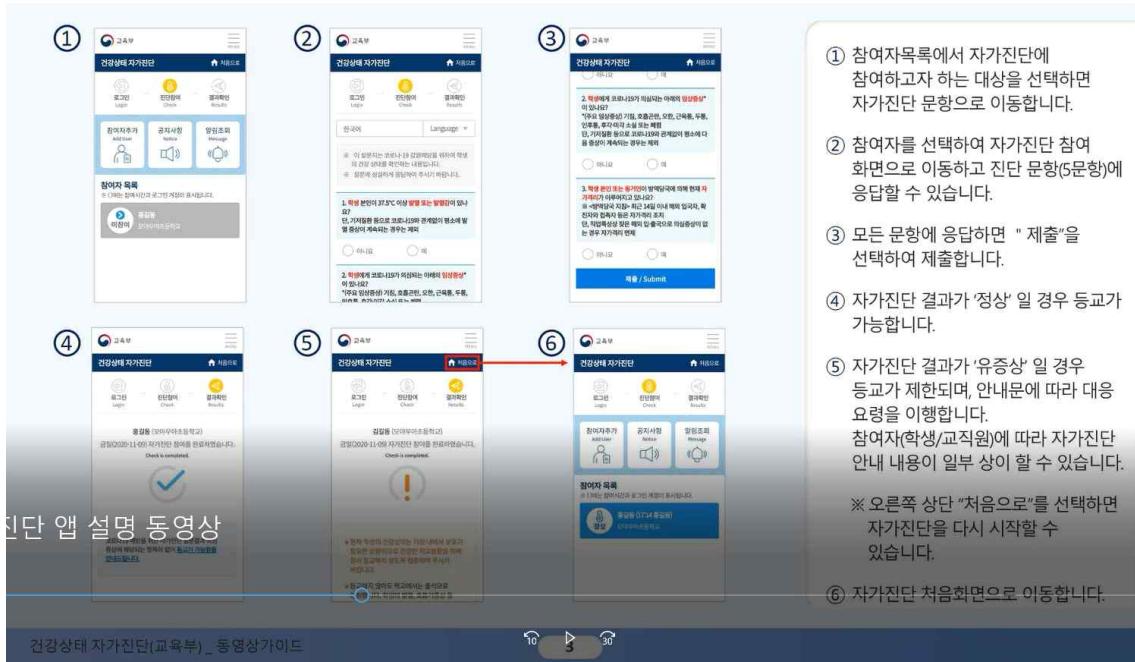


2. 로그인



건강상태 자가진단(교육부)_동영상가이드

3. 진단참여



진단 앱 설명 동영상

건강상태 자가진단(교육부)_동영상가이드

- ① 참여자목록에서 자가진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하면 자가진단 문항으로 이동합니다.
- ② 참여자를 선택하여 자가진단 참여 화면으로 이동하고 진단 문항(5문항)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.
- ③ 모든 문항에 응답하면 "제출"을 선택하여 제출합니다.
- ④ 자가진단 결과가 '정상' 일 경우 등교가 가능합니다.
- ⑤ 자가진단 결과가 '유증상' 일 경우 등교가 제한되며, 안내문에 따라 대응 요령을 이행합니다. 참여자(학생/교직원)에 따라 자가진단 안내 내용이 일부 상이 할 수 있습니다.
- ※ 오른쪽 상단 "처음으로"를 선택하면 자가진단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.
- ⑥ 자가진단 처음화면으로 이동합니다.

건강상태 자가진단(교육부) 학생/교직원

4. 부기기능

① 참여자 추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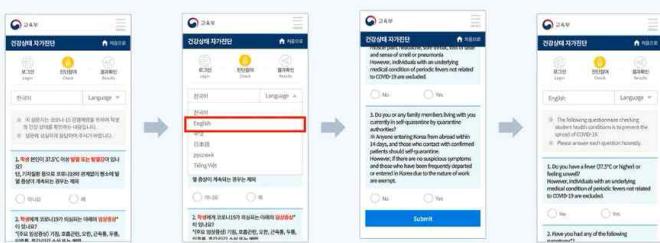


- ①-1. 참여자추가 버튼을 선택하면 참여자(다자녀, 교직원 자녀 등)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.

- ①-2. 필수입력사항(학교, 성명, 생년월일)을 입력하고 추가버튼을 클릭합니다

- ①-3. 추가된 등록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② 진단문항 다국어 지원



- ②-1. 자가진단 문항은 한국어 이외에 5개 언어(영어, 중국어, 일본어, 러시아어, 베트남어) 선택이 가능합니다.

건강상태 자가진단(교육부)_동영상가이드

4

건강상태 자가진단(교육부) 학생/교직원

4. 부기기능

③ 알림 조회(App만 가능)



- ③-1. 자가진단 앱을 통해 기관, 학교 등에서 보낸 알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- ③-2. 알림 조회 목록에서 신규 알림을 선택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④ 공지사항



- ④-1. 자가진단 앱을 통해 교육부, 학교 등에서 등록한 공지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- ④-2. 공지사항 목록에서 공지사항을 선택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건강상태 자가진단(교육부)_동영상가이드

5

4. 부가기능

⑤ 진료소찾기



⑥ 코로나19 시도정보

⑤-1. 자가진단 앱을 통해 국민안심병원과 선별진료소를 조회하고 위치, 전화번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⑥-1. 자가진단 앱을 통해 코로나19 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⑦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



⑦-1. 초기 설정 이후 재접속 할 경우 시작화면에서 설정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.

⑦-2. 화면 하단 “다른계정 로그인”을 클릭하면 기존 로그인정보가 삭제되고, 다른 참여자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.

⑦-3. 이후 최초 시작화면에서 로그인 정보를 입력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

5. 로그아웃



① 오른쪽 상단 메뉴를 클릭하고 로그아웃을 선택합니다.

② “로그아웃 하시겠습니까?” 팝업에 <예>를 선택하시면 로그아웃 할 수 있습니다.

③ 이후 로그인 할 경우 비밀번호만 입력하여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.

참고5

냉난방기 등 사용 시 환기 수칙

① 일반원칙

- (기본 방향) 냉난방기 사용 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공기의 흐름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어 **자주 환기하고, 풍향 및 풍량에 주의**하여 사용
 - 가능한 자주 외부 공기로 환기하고, 냉난방기·공기청정기의 바람이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하고, 바람의 세기를 가능한 낮춰서 사용
 - ※ (공기청정기) 사용설명서에 따라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,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에 제한적으로 사용 권고
 - ※ 이외 사항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, 실내공기질관리법,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

② 세부원칙

- (사용 전·후) 냉난방기 내부 및 실내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둔 상태에서 **송풍 등을 통해 최대 풍량으로 30분 이상 가동함을 권고**
 - ※ 강의실별 개별 냉난방기·공기청정기 사용 등으로 여건상 사용전·후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총장의 판단 하에 1일 1회(사용 전 또는 사용 후) 이상 적용 가능
- (사용 중) 쉬는 시간, 점심시간마다 환기하기(1회 환기 시 겨울철 3분 이상, 여름철 10분 이상)
 - ※ 기계환기 시설은 기계환기와 자연환기 병행 실시
 - 환기 시에는 창문과 문을 개방하여 **맞통풍**하기
 - 바람 방향은 천장 또는 벽으로 향하게 하고, 바람의 세기는 가능한 약하게 하기
 - 화장실은 문을 닫고 화장실에 설치된 배기팬을 상시 가동하여 환기
 - 냉난방기, 공기청정기 필터는 사용설명서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
 - ※ 필터 청소 또는 교체 시에는 마스크, 장갑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 하에 실시하고 완료 후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

③ 그 외의 사항

- 대학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**환기와 함께...**
 - **마스크 착용, 호흡기 에티켓, 손 위생,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두기**
 - 대학 내 사람들의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을 **일상소독**(최소 일 1회 이상)
- ※ 본 내용은 국내외 문현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근거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생활방역 수칙의 일환으로 방대본(질병청)에서 권고하는 사항으로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대학 실정에 맞게 보완함
- ※ (참고자료) 유럽난방환경공조연합 COVID-19 guidance document('20.8.3.), 미국냉난방공조학회 Epidemic Task Force('20.8.17.), 한국건설기술원 냉난방기 가동시 호흡기 감염병 전파 양상 및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 중간보고서('20.10.23.)

참고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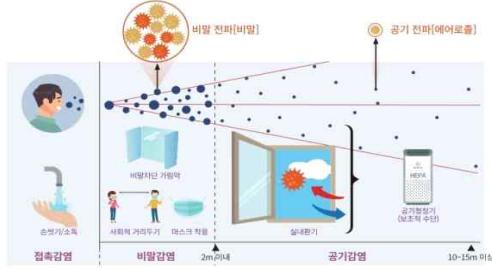
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

코로나19 바이러스 비말입자 확산특성과 예방법

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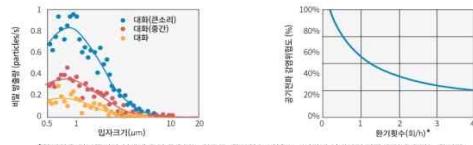
| 비말입자 크기별 특성 및 코로나19 바이러스 생존시간 |

- 5μm 이상의 비말은 대부분 1~2m에서 침강하나, 5μm 이하의 미어로졸은 공기중 장시간 부유하여 10m 이상 확산가능
- 코로나19는 공기중 3시간, 스테인레스에서 2일간 생존가능(출처:NEJM, 2000)
- 접촉 및 비밀감염 방지 위해서는 소독, 사회적 거리두기, 마스크착용 등이 유효한 수단
- 건물내 접촉감염 및 미어로졸에 의한 공기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환기가 필수적 수단



| 활동량에 따른 비밀방출 및 환기에 의한 공기전파 감염위험도 변화 |

- 활동량에 따라 호흡량(바이러스 배출량)이 증가하므로, 체육시설 및 카페 등과 같이 호흡량이 많은 시설은 공기전파 감염위험도가 높음
- 환기량/자연환기 및 기계환기의 커질수록 공기전파 감염위험도가 낮아지며, 10분 내외의 자연환기시 (외부환경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, 3회 환기횟수 확보) 오염물질 농도 및 공기전파 감염위험도 1/3로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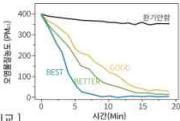
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

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

2

|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전후면 창문 개방 및 냉난방기 기동중에도 자연환기 |

- 하루에 최소 3회, 매화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를 실시하고, 맞통풍을 고려하여 전후면 창문 및 출입문 개방



| 중복도 형태의 건물(학원 등)에서는 유해물질 확산방지를 위해 |

- 출입문은 항상 닫은조건을 유지하고, 자연환기는 동시에 실시!
- 출입문 상시 개방시 다른 공간으로 유해물질 확산 우려가 있으므로 출입문은 항상 닫은 조건을 유지하여, 자연환기시 모든 실에서 출입문과 창문을 동시에 개방하여 환기



| 환기설비가 없는 건물에서 선풍기 등을 활용한 환기량 증대방법 |



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

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건물 유형별 환기기아이드라인

3

| 코로나19 대응 환기기아이드라인 일반원칙 |

-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활용하여 실내공간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등 실내유해물질 제거
 - 창문 및 출입문을 개방하고, 선풍기 및 환기설비 등으로 환기량 극대화
 - 공기청정기 활용시 유해물질 제거에 보조적인 도움



| 건물 유형별 코로나19 대응 환기기아이드라인 기본원칙 |

- 환기설비 외기도입량을 최대로 하고(내부순환모드 지양), 환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에서는 자연환기를 수시로 시행
- 건물내 충간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실 배기팬 상시가동 및 위생배관 점검

건축물 및 환기설비 유형



환기기아이드라인 기본원칙



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

참고7

일상소독 카드뉴스

2020.3.24.

질병관리본부
KCDC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

우리의 건강을 위해 일상 속 소독을 지켜주세요!

-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-



1/9

2020.3.24.

질병관리본부
KCDC

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그 어느 때 보다도
일상 속 소독의 생활화가 필요할 때입니다.

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정이나 공공장소의
소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

2/9

2020.3.24.

질병관리본부
KCDC

청소·소독 전 필수 사항!

개인보호구



일회용 장갑



마스크



방수 앞치마

준비물품



소독제



찬물



대걸레



일회용 천



폐기물 봉투



갈아입을 옷

3/9

2020.3.24.

질병관리본부
KCDC

소독할 땐 이렇게 해주세요!



1.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.



2. 개인 보호구를 잘 착용해주세요.



3. 소독제를 희석해서 준비해주세요.



4. 희석한 소독제를 적신 천으로
자주 접촉하는 장소나 물건을 닦아주세요.

4/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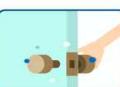
2020.3.24.

질병관리본부
KCDC

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해주세요!



손잡이, 난간, 문고리, 팔걸이, 엘리베이터 버튼,
콘센트, 스위치 등 다양한 장치 등



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물건의 표면
(예: 키보드, 책상, 의자, 전화 등)



화장실: 수도꼭지, 화장실 문 손잡이,
변기 뒷개, 욕조, 화장실 표면 등

5/9

2020.3.24.

질병관리본부
KCDC



잠깐! 이렇게 소독해주세요!

✓ 70% 알코올(에탄올),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
(가정용 락스) 등(환경부 승인 또는 신고된 제품)을
충분히 적신 천으로 하루 한 번 이상 닦아서 소독해주세요.

✓ 소독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NO!
청소 전/중/후 충분한 환기는 필수 OK!

※ 소독제 유해성 정보 및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주세요
(코로나19 홈페이지 소독지침 활용)

6/9

2020.3.24.



건물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는 더 자주 청소 및 소독해주세요!



청소·소독 담당자는 소독제를 충분히 적신 천으로 문 손잡이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닦아야 합니다.

이렇게 소독해주세요!

[예시] 차이염소산나트륨 희석액(500ppm)
=차이염소산나트륨 10ml+찬물 990ml(1,000ml)까지 채우기

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, 흡입위험 증가 및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꼭 닦아서 소독해주세요!

7/9

2020.3.24.



여기서 잠깐! 청소 및 소독이 끝났다면?



- 소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넣고 밀봉해서 버려주세요!
- 소독 후 사용 전까지 충분히 환기해주세요!
- 소독 후 손씻기, 샤워 등 개인위생을 꼭 실천해주세요!

8/9

2020.3.24.



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소독방법, 잘 확인하셨나요?

청소·소독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**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**하면
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(1339 또는 지역번호+120)에
문의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!



9/9